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5호

발행일: 2022. 6. 10. (금)

제397회 국회(임시회, 2022. 5. 3. ~ 2022. 6. 1.)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사이버보안 등 국민 생활안전 강화
- 나. 국가균형발전
- 다. 산재보상 강화
- 라.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397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회기 중 4차례에 걸친 본회의가 있었고, 5월 3일 제1차 본회의(1건)와 5월 29일 제4차 본회의(110건)에서 모두 11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397회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업무상 재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제고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원 재해의 추정 범위를 넓히고 보다 신속·용이하게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5)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6)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397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5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110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6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등 13인
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1인
8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등 16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1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2인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의원 등 10인
1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0인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등 11인
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3인
1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등 12인
1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6	행정안전위원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9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의원 등 10인
2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의원 등 10인
24		에너지산업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0인
2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0인
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의원 등 13인
2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14인
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1인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9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1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2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7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장
3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0인
3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40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의원 등 15인
4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0인
4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의원 등 14인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5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6	보건복지위원회(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0인
4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0	보건복지위원회(1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0인	
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9인	
5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 등 10인	
5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0인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2인	
5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58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8인	
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1인	
60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3		환경노동위원회(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6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72	환경노동위원회(28)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7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의원 등 10인	
7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등 14인	
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0인	
7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77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7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0인	
7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등 10인	
8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2인	
8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의원 등 10인	
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5인	
8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등 10인	
8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0인	
8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등 11인	
8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의원 등 11인	
8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1인	
88		국토교통위원회(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93	국토교통위원회(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9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등 13인
99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 등 13인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등 12인
1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등 10인
10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등 10인
10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등 10인
1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등 20인
105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0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의원 등 11인
10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의원 등 11인
10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2인
109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4인
110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12인

이번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사이버보안 등 국민 생활안전 강화, 국가균형발전, 산재보상 강화,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사이버보안 등 국민 생활안전 강화

개요

최근 기업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스미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후속 대응 강화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사이버 정보 침해 사고 예방과 스미싱 피해 후속 대응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및 건강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체계적 규율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사이버 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침해사고의 피해 확산과 유사한 침해사고의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p> <p>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등은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함.</p>	2022-05-29 (원안가결)
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p>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p> <p>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p>	2022-05-29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p>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p> <p>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p> <p>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수상레저 현실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p>	2022-05-29 (원안가결)
3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p>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 제2항 및 제56조 제1항 제2호 신설).</p> <p>나. 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p>	2022-05-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110대 국정과제]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과제목표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

지역·산업 분야별 디지털 융합·혁신 가속화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5G·6G 선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24)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
-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

(디지털 국민안전 강화)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22~)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전 강화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26)

(디지털인증 활성화)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23~)하고, 이용자 편리성 강화와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23~) 추진

(산업·지역 디지털 혁신)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22~) 및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및 대규모 프로젝트(100대 지역체감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등)를 통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23~)

(디지털 보편·접근권 확립)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23~),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25)과 공공Wi-Fi('22~) 등 디지털접근권을 제고
-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22~) 등 추진

[110대 국정과제]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국정원·국방부·과기부·외교부)

과제목표

전통적 국가안보 영역에서 경제안보·국민생활까지 확장 추세인 국가배후 조직 및 국제 해킹조직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구축

汎정부 차원 협력체계 공고화, 사이버 방어체계 및 국제공조 시스템 강화를 통해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유지 및 국민·기업에 안전한 사이버환경 제공
관련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인재육성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기반 공고화

주요내용

(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총'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경제 안보) 民官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 시설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 경제 안보에 기여

(국민생활 안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및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 확보


(기술 고도화 및 국제협력 강화) 産·學·研·官 협력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개발 및 국제공조 활성화, 사이버위협에 대한 억지 역량 배가

- 新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해킹 탐지·차단·추적 시스템 고도화
-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충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 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인력 확보

2022년도 업무계획 (과기정통부)


2022년 목표



미래기술 강국



미래영역 선점
(우주, 메타버스 등)



과학기술·디지털의
혜택 확산

전략·핵심과제

기술패권 시대,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 1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 구축
- 2 정부 R&D 전략적 투자 강화
- 3 효율적 R&D 관리 기반 정착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 1 우주 핵심기술 자립을 통해 7대 우주강국 진입
- 2 국가안보, 국민건강,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기술 개발
- 3 기초연구·지역혁신 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 성과 확산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1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확충
- 2 세계와 경쟁하는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융합 확산
- 3 디지털 포용 사회 및 안심국가 구현


디지털 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


- 1 인재양성 지원 확대를 통한 도전기반 조성
- 2 청년에게 더 큰 성장무대 제공
- 3 세계를 향한 도약의 발판 마련


현안과제

● 전략기술 분야 인재 불균형 해소

●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안전성 제고

 R&D 전략성 강화

 초연결 초지능 사회 고도화

 디지털 감성 활용

01. 기술패권시대,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공급망 등 국가생존을 좌우할 기술에 R&D 역량을 총결집해 기술주권 확보



(필수전략기술)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전략'(21. 12월)에 의거, 민군 겸용(dual use) 성격의 범부처 전략기술* 지정 및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수소, 첨단로봇, 양자, 우주, 사이버보안 등

(지원 인프라) 전략기술의 지속적 육성 및 제도와 위한 특별법 제정과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할 한국형 DARPA* 도입 병행
* 육·고등연구기관으로, 파괴적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해 인턴십, 융합인식 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정상회담 후속으로 미국과 신형기술(우주 이동통신·바이오·양자) 분야 협력 본격화 및 EU Horizon(혁신) 프로그램 참여 협의

02.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혁신

혁신주체간 다양한 협업 및 임무지향형 기술개발로 미래기술 선도



(우주개발) 미래세대 위한 우주콘텐츠 보급 확대를 위해, 항법·발사체·탑재위성 등 다각적 민관협력 사업으로 체계중립기업 육성

(탄소중립)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및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27) 수립

(미래기술) 국민건강(디지털 바이오·감염병 극복), 성장동력 창출(미래형 모빌리티 등), 기초역량 강화(융합연구 등)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노력 가속화

03.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 제공하는 기회 선점



(디지털경제(D.N.A.) 확장) 데이터 담 확충 및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을 전산업에 융합하고(AI+X), 5G 특화망(스마트 건물·공장 등) 본격화

(신산업 및 융합) 메타버스, 초거대AI(차세대AI), 6G 양자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SW혁신으로 정밀의료·자율주행 등 융합 촉진

(디지털 포용·안심국가) 소국민 디지털 기본권 보장 위한 포용법 제정, 디지털 배움터 지속운영 및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위한 민관협력 확대

04. 디지털 전환 시대, 청년 역량증진 강화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증진 통해, 코로나 효과 최소화 및 미래 대비 병행



(튼튼 도전기반) 청년미소(미래 SW) 프로젝트 중심 수요자맞춤형 교육·멘토링 제공, 기술(연구소)창업 및 디지털창업(1인미디어) 지원 확대

(더 큰 성장무대) 성장 지원 우선배분(디지털 배우처·출연연 인프라), 카드리어지시재단·창업캠프·특화펀드 등 민관협력 청년 지원체계 신설

(세계 향한 도약발판) (금융정책) 우수인재 유치(교원 겸직), 국내외 스타트업 간 합작으로 교차진출 유도, 해외 테크봉사단 등 글로벌 프로그램 확충

출처: 2022년 업무계획 과기정통신부 누리집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첨단 과학기술 보호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이버공격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과기정통부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과기정통부 65개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실제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종류의 체계적인 사이버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사이버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사이버 위기경보가 상향(관심→주의, 3.21일)되는 등 출연(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 과학기술 보호 중요성이 증대함
 - ※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 이에, 최근의 사이버 공격 유형과 추세를 반영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구기관 등이 사이버공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임
- 이를 위해, 5가지 종류의 사이버 모의 훈련을 선정하여 65개 기관의 전 직원, 시스템 관리자, 정보보안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대상자(임무)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임
 - 도상훈련(5월)은 65개 기관의 시스템 관리자 및 정보보안 관련자 등 114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시 조치시간 및 조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사전 대응역량을 제고함
 - 해킹메일 대응훈련(5월~10월)은 65개 기관 전 직원(42,909명)을 대상으로 2차례의 모의해킹 메일을 발송하여 열람율, 신고율 등을 평가함으로써 전 직원의 정보보안 인식을 제고함
 - 디도스(DDoS) 대응훈련(5월~10월)은 65개 기관 시스템 관리자 및 정보보호 관련자를 대상으로, 모의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차단 조치 수행 및 보안장비 설정상태 점검을 통한 사전 대응역량을 제고함
 - 사이버 모의침투 대응훈련(7월~11월)은 화이트해커를 활용하여, 47개 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직접 침투를 시도함으로써 현 시스템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해킹 대응력 강화를 추진함
 - 연합훈련(8월)은 3~4개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의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를 중심으로 보고체계, 긴급대응 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유도함
- 아울러, 2022년도에는 글로벌 사이버안보환경 동향에 맞춘 전문적·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연구기관 및 민간 보안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쓸 것임
 - 민간 보안기업은 공모를 통해서 최적의 기업을 선정하고, 연구기관(KISTI, KISA 등)과 훈련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훈련의 실시부터 진단까지 훈련 전 과정을 보다 전문화할 예정임
 - 이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은 소속·산하기관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정책평가,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유도해 나갈 계획임

출처: [보도자료](#) 과기정통부 누리집 2022. 5. 23.

참고 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안: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 등
김영식 의원안: 침해사고 대응 강화 및 스미싱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5. 4.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가 더 빨리 찾아왔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는 편리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라 디지털 위험과 혼란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디지털 사회를 누리고 잘 살기 위해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칭)디지털청(또는 디지털위원회)을 설치하여 디지털 사회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입법·정책」 2021. 12. 15.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2009년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여 현재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음.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포함한 국가·공공분야의 보안관제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의 자원 손실이나 정보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위험에 대한 탐지 및 침해 대응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운영실태,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주요국의 피싱(Phishing)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 입법·정책 분석」 2021. 10. 28.

전화나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등을 통해 신원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이하 '피싱 사기')로 매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기죄 처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 「전기통신사업법」상 전화번호 변작 및 거짓 표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도 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연방은 개인신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사기·사칭방지법」, 「신원사기처벌강화법」을 두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등은 주(州) 정부 차원의 피싱 사기 방지법을 두고 있다. 현재는 사기 대상이 되기 쉬운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상정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하게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 및 휴대음성통신역무의 부정한 이용방지에 관한 법률」, 「범죄이용예금계좌 등의 자금을 의한 피해회복분담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고령층 위주로 주의 환기 전화를 걸거나 자동녹음 기능이 부착된 예방 전화기 구입비를 보조하는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싱 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지급수단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싱 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피싱 사기의 범죄 수법·수단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일본과 같이 피싱 사기 취약층인 고령층에 대한 개별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사, 플랫폼기업, 은행이 기술 발전 및 통신 이용 방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싱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쟁점」 2018. 6. 12.

최근 라돈을 규정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한다는 침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최초 관련 의혹이 한 매체로부터 제기되었을 때 담당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하였지만, 5일 만에 측정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기준치의 9배라고 번복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확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라돈은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천연방사선핵종 중 하나로 암석이나 토양 및 건축자재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이 반복적인 방사성 붕괴과정을 거쳐 발생시키는 무색, 무취의 비활성기체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라돈을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하고, 흡연 다음의 폐암 유발 원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모든 폐암 환자 중 6~15%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지금까지 라돈은 토양에서 유발되며, 건물 바닥의 균열된 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 아파트의 건축자재나 생

활용품에 의해서도 방출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라돈을 비롯한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외국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국가균형발전

개요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생활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기존 강원도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인구감소 위기에 놓여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을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 및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행정안전위원회	<p>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p> <p>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6조).</p> <p>나.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p>	2022-05-29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행정안전위원회	<p>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p> <p>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p>	2022-05-29 (원안가결)
2	행정안전위원회	<p>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p> <p>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난 7월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음.</p> <p>또한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의 52%, 카드 사용액은 72%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p> <p>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며 악순환으로 나타남.</p> <p>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지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p> <p>또한 지역은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향상된 질의 주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고자 함.</p>	2022-05-29 (원안가결)
3	국토교통위원회	<p>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에 따라 건설청이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취득한 청사 등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지식산업센터를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p>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있어 국정운영의 효율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인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2022-05-29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3	국토교통위원회	<p>[주요내용]</p> <p>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p> <p>나.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 등을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p>	2022-05-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쉼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선공약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지역균형발전 비전 발표(4. 27.)
→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5. 9.)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

[110대 국정과제]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과제목표

그간 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경제·인구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필요

주요내용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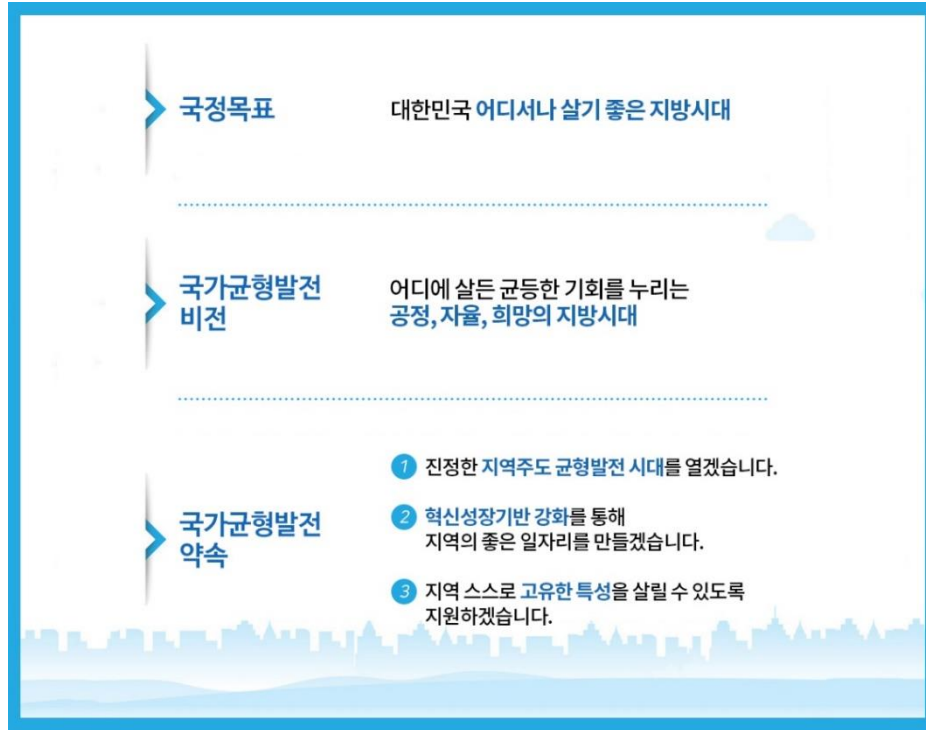
* 산업은행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도시계획 개편)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 도입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국가균형발전 국정목표/비전과 약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처: [국가균형발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누리집

참고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 11.

이양수 의원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 4.

정진석 의원안 등: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집무실 설치계획을 이전계획에 포함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검토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 9.

서삼석 의원안 등: 소멸위기지역 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 1.

[2022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부문별, 시도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22. 3.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21. 8.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 5. 25.

이 연구는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2021년 정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 인구이동 요인, 유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증감률 및 청년·고령인구 비중 격차가 상당한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시 향후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규모 및 인구구조의 격차 심화 우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출산율, 높은 고령화율이 인구감소를 야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 간 인구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청년층 유출임.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동에 있어 젊은층과 고학력자의 이동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동기간 유출비율이 높은 직종은 대체로 고학력·고숙련·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인 반면 저학력·저숙련·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직종의 유출은 매우 적어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간 직종 양극화 심화 또한 우려.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증감률 등 인구감소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관찰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인구변화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간 차등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인구변화 분석에 기초해 지역 고유의 자산·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다움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정책 전략과 함께 지역 청년의 교육·일자리 확충 및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2. 5. 12.

이 보고서에서는 초광역협력 관련 법령과 국내·외 지역간 초광역협력의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간 초광역 협력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초광역협력의 정의와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초광역협력 정책을 정리하였다. 또한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초광역협력 사례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3월 말에는 부산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다.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1. 10. 19.

이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방의 소멸위기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법·제도 및 각종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도출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소멸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시·도별 인구 분포 및 인구이동 현황, 지역소득·기업분포·기초생활인프라·대학분포 등의 지역 간 격차를 각종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지방소멸위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에 소멸위험지수를 이용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에서 위기지역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재생 및 발전을 위한 현행 지원 법령 및 제도를 고찰하여 그 한계점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한편, 보고서의 문제의식과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9월 6일부터 13일까지 3차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소멸 위기 실태와 그 대응과제를 상호 진단하였다.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2020. 6. 30.

이 연구는 인구감소 등으로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이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기본연구 2020. 10. 31.

공간계층 관점의 통합인 지역균형발전과 사회계층 관점의 통합인 포용적 성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파괴되어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국내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공간구조의 설정이 중요하게 부각되기에 필연적으로 통합하여 적극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지역균형발전과 포용적 성장의 통합적 논의가 필수적임.

다. 산재보상 강화

개요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 종사자), 소방·경찰공무원 등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신속·용이한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신속·용이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p> <p>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p> <p>이에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며, 이로 인하여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p>	2022-05-29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환경노동위원회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개정법률 공포 이후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업무상 재해를 겪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안 제91조의15부터 제91조의21까지 신설, 부칙 제8조 등).	2022-05-29 (원안가결)
2	행정안전위원회	<p>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p> <p>또한,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전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p> <p>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6조제2항 신설 등).</p>	2022-05-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110대 국정과제]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과제목표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주요내용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 지원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 지원

- 산재예방 종합포털 구축(고위험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 확대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및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확대

[110대 국정과제]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고용부)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할·복귀 지원) 특고·플랫폼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 개선

- 산재근로자맞춤형 재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직업 복귀 지원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

2022년도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출처: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2022.

참고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2. 5.

윤준병 의원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

임종성 의원안: 특고의 전속성 요건 폐지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안전기획과 2022. 4.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2020. 3.

[배달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 관련 논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신산업규제법제리뷰」 2021. 8. 3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급증으로 플랫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국내 판례의 취지와 그와 반대로 근로자성을 긍정한 프랑스와 스페인 판결의 주요 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본 연구는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변화를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사회적 권리를 기업-노동-사회 간 사회계약의 약화로 개념화하고 노동, 사회보장, 그리고 숙련개발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제2장~제3장에서는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이 기업-노동-사회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해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5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앞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사회·경제적 화두다. 그 중심에는 플랫폼 경제가 있다.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되고 우리는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부른다. 노동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플랫폼노동자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연결하기’를 위한 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배달노동자의 존재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원의 사고나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들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는데, 이때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이라는 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12. 11. 23.

이 보고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입법대안과 제도발전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재보험 통계 원자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6월,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복지노동포럼(의원연구단체) 공동세미나 2013. 3. 13.

발표: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이승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김가람(심상정의원실 보좌관)

이정환(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한인상(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라. 지식재산 보호 강화

개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원천이며, 지식재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p>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 <p>지식재산기본법을 통해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육성하여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여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관련 산업 발전의 촉진 및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고자 함.</p> <p>이에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p>	2022-05-29 (수정가결)
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p> <p>현행법상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실용신안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p>	2022-05-29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p> <p>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2항).</p>	2022-05-29 (원안가결)
3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p>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p> <p>현행법상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고소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위 제한된 고소기간(6개월)이 도과한 후에야 침해사실을 알게되어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디자인권 침해가 불분명하더라도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으려고 일단 고소를 제기하고 보는 고소남발의 우려도 일부 있으며, 셋째, 수사기관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여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p> <p>이에,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과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0조 제2항).</p>	2022-05-29 (원안가결)

정책 동향

[110대 국정과제]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과제목표

시장 · 기업 · 수요자가 원하는 산업 R&D로의 전환 및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 · 거버넌스 개편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주요내용

(목표지향형 · 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전환, 경제 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검토

-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및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 추진

[110대 국정과제]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부)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 촉진 목적 民官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 제고

- 기술지주회사 · 기술신탁관리기관 · 기술거래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

(산업기술 R&D 자율성 · 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 「산업 R&D 투자전략 회의」 신설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6G · 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 특히 확보 가속화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 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 · 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추진

2022~2026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출처: 전략 및 추진과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 11.

참고 자료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 3.

이원욱 의원안: 지식재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 11.

이소영 의원안: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202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22. 3.

[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활용 지침서 개정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2021. 10.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기반 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282호 2021. 12. 1.

메타버스 구현의 유형은 가상세계(Virtual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혁신활동에 있어서는 물리적 존재와 가상의 존재가 데이터, 소프트웨어로 연결되어, 현실의 상황을 가상의 존재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를 통해 혁신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검증 및 분석, 예측, 예방 등을 최소한의 위험부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그동안 기술사업화를 위한 Co-creation 필요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실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기회로 인식되면서 기술사업화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고위험 등 실증에 제한이 큰 자율주행자동차, 대규모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우주, 항공, 에너지 등 물리적 제약 및 규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혁신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 접근에 있어서 직면하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실세계 법규와 디지털세계 법규와의 연계, 국지적 성격을 갖는 현실세계 법규들이 글로벌 통합세계로 존재하는 디지털세계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글로벌 공동의 기준 설계 등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 범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12. 30.

본 연구에서는 WTO와 WIPO 등 국제기구와 각국의 FTA에서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WTO TRIPS 협정의 도입 이후 세계 각국 간 FTA가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범이 어떻게 진화해 갔으며, 이러한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을 위한 지식재산보호제도 연구](#)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2017.

본 연구는 1차 산업혁명기의 경제사회현상의 변화와 이에 대한 기술보호제도(특허)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자 한다. 스티븐 호킹(Stephen William Hawking), 에릭 브린운프슨(Erik Brynjolfsson), 앤드류 맥아피(Andrew McAfee),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 등 유명 학자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불행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는 기술발전과 기술보호의 관점에서 인간

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로봇세 등의 부과에 의한 재정수입증대로 기술복지와 인력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지식재산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기술 및 인력유출과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유휴기술인력이 재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산업크러스터를 만들어 외부로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차세대 과학기술에 대응한 지식재산(IP) 정책 방향 - AI와 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한변리사회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2021. 3. 4.

[주제1]이상직, 인공지능 기술 및 그에 따른 법제도 동향

[주제2]박상현, 인공지능 발명 특허 적격성 논의 및 AI 특허 심사기준

[주제3]이일구, 산업 분야별 AI특허 현황 및 문제점

[주제4]정지혜, AI 특허평가의 한계 및 전문가의 역할 재고

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개요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및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등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도 새 정부의 약속입니다. 특히 장애인에는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합니다.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늘립니다.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 및 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다 강화합니다. 교통수단이 부족한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법정대수를 높이고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교체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합니다.

2022년 5월 29일 본회의에서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p>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 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p> <p>이에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안 제5조제2호)</p>	2022-05-29 (원안가결)
2	보건복지위원회	<p>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 <p>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p> <p>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35조의2 신설 등).</p>	2022-05-29 (수정가결)

정책 동향

[110대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과제목표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주요내용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

(발달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평가를 거쳐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충

-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 확대

[110대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고도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 서비스 정교화

(소득·고용) 4차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 개발 및 맞춤형 디지털 센터 확충

- 직업재활·일자리 지원·장애인연금을 통한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의료·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주거·편의) 시설거주 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 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및 BF 인증제 운영 강화 추진

(이동권) 편리한 택시 이용을 위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이용 여건이 어려운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상향 및 비휠체어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23년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보건복지부)



출처: 정책목표/추진전략 보건복지부

참고 자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최종윤 의원안: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자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인정 등
이용빈 의원안: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의 활동지원급여 선택자격 부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 4.

서영석 의원안: 최종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설치
한병도 의원안: 발달장애인 행동문제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의무 부과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1. 11. 2.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사업에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등이 있음
-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각 사업은 장애인 건강증진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음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부진하고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이 부재함
 -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은 구급차 이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인지도 부족, 장애인 본인부담금 등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임
- 「장애인건강권법」은 2017년 12월 30일 시행 이후 약 4년이 되어가지만,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부족한 실효성으로 인해 건강관리 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수가 적고 서비스가 미숙하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제고에 있어 법적 효력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동에 대한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시 및 보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9. 4. 12.

현행 「장애등급기준」에 따르면 1~3등급으로 판정되는 중증장애로 볼 수 있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 특성상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보호에 취약하여 학대·유기 및 성적·경제적 착취 등 인권침해 사례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우리 사회 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 이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살펴보고, 동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보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맞춤형 장애인 복지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4-12 2014. 10. 31.

- 오늘날 의학이 발전하고 각종 안전대책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구증가, 전쟁과 각종 사고 그리고 노령화 등으로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많은 장애인은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오늘날 선진국들은 장애인정책에 있어 장애인의 자립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음. 더 이상 시혜적인 복지정책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 사회전반에 걸친 장애인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자로서 장애인인 당사자의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려고 함

- ‘맞춤형 장애인 복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장애인 중심의 복지를 구현하는 것임.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의 변화에 맞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지원, 생활편의시설 제공, 정보 접근권 보장,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의 제공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다수 법률이 있음
-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미비된 부분이 존재함
-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의 계속되는 개정과 개별법의 제정으로 관련 법령의 입법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장애와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총괄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2016. 4.

- 맞춤형 서비스지원체계 추진단 운영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맞춤형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분석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평가 모델 개발
- 장애인단체, 현장전문가, 학계 등 자문회의 실시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2015. 12.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개인의 현물서비스량을 결정하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 서비스종합판정, 서비스전달체계, 현물서비스급여체계, 신규서비스개발 등을 유기적 · 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
 -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과제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장애인맞춤형서비스추진단’ 병행 운영
-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구 및 분석을 총괄하여 최종방안을 도출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